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

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어,
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는 등
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.

최근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
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
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,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,
현재와 같이 별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
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.

- 이에 시행예정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
조문 일부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
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조례에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
노후도 요건(57%)을 삭제하여
상위법령의 규정(50%)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